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11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김남근 · 강준현 · 권향엽  
김문수 · 김용만 · 김현정  
민병덕 · 박용갑 · 박 정  
박정현 · 박지혜 · 박해철  
송재봉 · 이강일 · 이광희  
이용우 · 이재강 · 이주희  
장종태 · 전현희 · 정일영  
진성준 · 허종식 · 박홍배  
의원(24인)

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률안이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체계등심사권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

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법과 파산·회생, 임대차, 국제법무 등 많은 민생법률들에 대한 법안심사 업무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나, 이러한 부수적 업무인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의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기본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본회의 상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단원제 국회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

이에,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체계·형식 및 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체계·자구심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과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48조제3항 신설).

나. 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다. 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체계·자구심사위원회

법률안·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39조제2항 중 “국회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 및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

제44조제3항 단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본문 중 “제4항까지에”를 “제5항까지에”로 한다.

③ 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의원을 포함

한다) 중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제1항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9조제3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제3항 후단 중 “제48조제4항을”을 “제48조제5항을”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9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6조제1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체계·자구심사위

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체계·자구심사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결과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자구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법제사법위원회 가. ~ 사. (생략) 아. <u>법률안 · 국회규칙안의 체계 ·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u></p> <p><u>&lt;신설&gt;</u></p> <p>3. ~ 17. (생략)</p> <p>② (생략)</p> <p>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생략)</p> <p>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u>국회운영위원회의</u> 위원이 된다.</p> <p>③ · ④ (생략)</p> <p>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략)</p>	<p>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 가. ~ 사.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3. <u>체계 · 자구심사위원회</u> <u>법률안 · 규칙안의 체계 · 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 · 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u></p> <p>4. ~ 18. (현행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국회운영위원회 및 체계 · 자구심사위원회</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p>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 ⑤ (생략)

제44조(특별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② (생략)

<신설>

같음)

② -----  
----제4항까지-----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특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체계·자구심사위원회-----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섭





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생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 ② (생략)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  
-----  
-----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체  
계·자구심사위원회-----  
-----
4.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  
 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  
 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  
 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  
 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  
 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  
 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  
 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

체계·자구심사위원회-----

-----, -----체계·

자구심사위원회 위원장-----

② -----

체계·자구심사위원회-----

③ 체계·자구심사위원회는 체

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여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결과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  
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사결과  
를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  
보고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만, 자구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  
장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